

Vol. 10

2025.10.20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04

F. 02-2017-2219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장 민 전임 mjang@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품목분류 변경고시
- III.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냉동딸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5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세번		공급자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감자칩 제조용	0	6,000톤
0701	90	기타			

- 2025년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세번		공급자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I. 법령 개정사항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10	초분류 딸기	과실로 한정한다.	0	3,000톤
	90	기타		0	1,300 톤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9	기타			
		1. 정제유: 가. 해바라기씨유		0	10,000 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 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 호 제 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9	기타: 6. 기타	과실로 한정한다.	15	3,500 톤
2009		과실 ·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 너 워터를 포함한다) · 채소 주스[발 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7	사과주스			
2009	79	기타		15	1,200 톤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I. 법령 개정사항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49	기타		0	수입전량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0	수입전량

(3) 시행일

2025. 09. 25

I. 법령 개정사항

2.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의 경우 2024년 9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 3 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텡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자	

(3) 시행일

2025. 09. 05

I. 법령 개정사항

3.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고시」 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8월 4일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대상물품 관세품목분류(HSK)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제외물품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 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I. 법령 개정사항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JFE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57
	2.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58
	3. 그 밖의 공급자	32.75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89
	2.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8.16
	3.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4.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5.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6. 그 밖의 공급자	33.10

(3) 시행일

2025. 09. 23. ~ 2026. 1. 22. (4 개월)

I. 법령 개정사항

4.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택배품을 받은 자가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 경우에는 종전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을 강화하고,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벌칙 규정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식물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를 벌칙대상자로 신설.
과태료 규정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로 수정하여 규정.

(3) 시행일

2025.09.19

II. 품목분류 변경고시

1. Cu Target with backing plate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NbOx target	품목분류 2 과-208 ('14.01.09.)
	2. Ni-Pt Target with Backing Plate ; 10% Ni-Pt, 4.5N, 300mm	품목분류 2 과-255 ('09.04.29.)
	3. Cu Target	품목분류과-106643 ('06.02.28.)
	4. Aluminum Target	품목분류과-106641 ('06.02.28.)
	5. Ta Target	품목분류과-106642 ('06.02.28.)
	6. Co Target with Al Backing Plate	품목분류 2 과-1746 ('09.11.12.)
	7. Ti Target	품목분류과-106653 ('06.03.02.)
물품 설명	반도체 웨이퍼 증착용 타겟으로 백킹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것	
HS CODE	- 변경전 : ① 제 6909.19-0000 호, ② 제 7115.90-1090 호, ③ 제 7419.99-0000 호, ④ 제 7616.99-9090 호, ⑤ 제 8103.90-0000 호, ⑥ 제 8105.90-0000 호, ⑦ 제 8108.90-9000 호 - 변경후 : (①~⑦) 제 8486.90-2040 호	
변경 사유	반도체 제조기계의 부품품에 해당하므로 제 8486.90-2040 호에 분류 (2025년 제 5 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025.09.16

2. Other whisky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Other whisky; W Rare by Windsor; U.K	품목분류 2 과-9804 ('15.12.16.)
	2. Whisky; W ICE BY WINDSOR; U.K	품목분류 2 과-313 ('15.01.15.)
물품 설명	위스키에 향 등을 첨가한 주류	
HS CODE	- 변경전 : 제 2208.30-9000 호 - 변경후 : 제 2208.90-9000 호	
변경 사유	그 밖의 주정음료에 해당하므로 제 2208.90-9000 호에 분류 (2025년 제 5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025.09.16

II. 품목분류 변경고시

3. Bearing 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MAIN BEARING CAP; H32/40; R.KOREA	품목분류 2 과-9280('15.12.01.)
물품 설명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를 지지하는 베어링 캡	
HS CODE	- 변경전 : 제 8483.30-9000 호 - 변경후 : 제 8409.99-8030 호	
변경 사유	엔진 부품품에 해당하므로 제 8409.99-8030 호에 분류 (2025년 제 5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2025.09.16

4. Diamond V Original XPC Ultra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Culture yeast; Diamond V OriginalXPC L210817	품목분류 2 과-1670 ('18.03.07.)
	2. Culture yeast; Nutritek; K100517	품목분류 2 과-3564 ('18.05.17.)
	3. Culture yeast; Diamond V Original XPC K201217(Ultra)	품목분류 2 과-4966 ('19.07.05.)
물품 설명	효모가 함유된 사료용 조제품	
HS CODE	- 변경전 : 제 2102.10-4000 호 - 변경후 : 제 2309.90-9090 호	
변경 사유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 2309.90-9090 호에 분류 (2025년 제 5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025.09.16

II. 품목분류 변경고시

5. NYLON MULTIPEL YAR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NYLON MULTIPEL YARN;Nylon covered spandex yarn;;;R.KOREA	품목분류과-104714 ('05.07.01.)
물품 설명	나일론 등을 합성한 사	
HS CODE	- 변경전 : 제 5402.33-9000 호 - 변경후 : 제 5402.31-1090 호	
변경 사유	나일론이 최대 중량이므로 제 5402.31-1090 호에 분류 (2025년 제 5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2025.09.16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물가안정 저해 부정유통 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3개 대책 추진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 조직(TF)’을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 ① (제품과세) 제조된 제품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② (혼용비율 과세) 제품의 가격을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로 배분 과세 // ③ (원료과세) 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보세공장 생산제품 관세산정 방법】

<p>▪ 내국원료 20만원 + 외국원료 10만원(세율3%) ⇒ 제품 90만원(세율5%) 인 경우</p>			
구분	①제품과세	②혼용비율(2:1) 과세	③원료과세
관세액	제품 90만원 × 5% = 4만5천원	제품 90만원 × 1/3 × 5% = 1만5천원	외국원료 10만원 × 3% = 3천원
<p>▪ (사례) 보세공장에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단순한 신청 누락으로 외국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원료과세’ 신청을 하지 않고, 원료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세조사에서 확인되어 수역원의 관세액을 추징받게 됨</p>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여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 (예시) 갑오징어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 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 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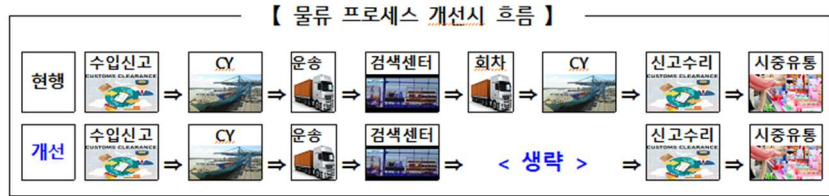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가 비원산지 액화천연가스(LNG)와 혼합되어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이러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 (지원 실적) '23년 62억 → '24년 61억 → '25년 62억(예정)



② 둘째,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 반입 물품은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신속한 반출을 유도하며, 반출기한 초과 시 제재를 강화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셋째,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허위 원산지 표시에 대한 통관검사와 유통단계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부정납품 행위는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구리 스크랩 등 중요 자원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우범화물 분석과 적재지 검사를 철저히 진행 예정이다.

④ 넷째,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하여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할당관세품목의 품명과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해 국민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농축수산물(68 개),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 개) 등 86 개 품목 공개중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덤핑수입 차단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범정보 공유 등 실효적 덤핑방지를 위한 '반덤핑 협의체' 설치·운영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 및 우회덤핑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9월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에서 덤핑방기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덤핑방기관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기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가 증가하면서 올해 8월까지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를 넘어 역대 최대치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며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기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품목번호·규격 허위신고, 공급자 허위신고, 가격약속 위반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덤핑방기관세율을 산정하며, 관세청은 덤핑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회피 행위를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덤핑 조사와 심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법·제도 개선 및 효과 분석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성과를 점검하며,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산업·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회피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기관세 회피는 국가 재정과 국내 산업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위원회와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우려품목 모니터링 등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내 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 표 공개

-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 신규 추가, 실리콘 수지 등 8개 품목 삭제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부과대상 쉽게 확인
- [별첨] 미 상호관세 예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5.9.8.시행)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7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9월 8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미국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② 미국이 7월 30일 발표한 구리 품목 관세 부과에 따라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 제공

이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 안내

- 관세청,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 약 72% 업체 적극 참여 중 ... 미제출 업체는 세관에서 개별 점검 예정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 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 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하여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